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92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인요한 · 권영진 · 김은혜
조승환 · 광규택 · 김 건
안상훈 · 구자근 · 성일종
장동혁 · 김도읍 · 김미애
정점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 · 신고 · 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

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및 비용 부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절차”를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용자 통지”로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의4제6항 본문 중 “요구할”을 “명할”로 한다.

제4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7(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7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자 보호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적용례) 제4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및 비용 부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u>④</u>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u>⑤ -----</u> <u>-----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용자 통지-----</u> <u>--.</u>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생략)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⑧ (생략)

<신설>

-----명할-----

⑦·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7(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7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

	<u>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u>
--	----------------------